

문서번호	안전관리처-754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2.17.
공개여부	공개

★대리	팀장	안전관리처장	경영전략본부장	
협 조	팀장		인사처장	
	산업안전국장			
	교통시설운영처장			

2016년 1/4분기 산업재해예방 점검계획

2016. 2

2016년 1/4분기 산업재해예방 점검계획

해빙기를 대비하여 현업부서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
유해·위험요인의 사전 조치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

□ 관련 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
- 안전관리처-460('16.1.28)호 「2016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」

□ 점검 개요

- 기 간 : 2016. 2. 22 ~ 3. 23(기간중 22일)
- 대 상 :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등 17개 부서
- 점 검 자 : 안전·보건관리자, 명예산업안전감독관
※ 노사 합동점검 추진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, 2항)
- 점검방법 : 산업안전·보건분야 세부 점검사항에 의한 점검

□ 중점 점검사항

○ 법정사항

구 분	점검 사항	산업안전보건법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여부 ○ 유해 또는 위험 시설의 안전 보건 표지 설치 부착 ○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·조언 ○ 안전보건교육실시 및 기준 준수 여부 ○ 위험성평가 수립 및 시행 여부 ○ '15년 3, 4분기 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	제10조(보고의무) 제12조(안전표지의 부착) 제16조의2(지도·조언) 제31조(안전,보건교육) 제41조의2(위험성평가)
안전상의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계·기구 기타 설비 위험 예방 조치 ○ 폭발·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○ 옹벽, 절개지 등 이상 유무 	제23조(안전조치) 제33조(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)
보건상의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○ 식당·사무실 등 위생관리 상태 ○ 보호구 착용 및 구비상태 확인 ○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작성 및 게시 여부 	제24조(보건조치) 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비치 등)

○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(공사감독 1~3처) 중점사항

- 절·성토사면 지반상태의 안정성
- 흙막이 지보공 배면 상태 및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조치 여부
-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및 재료의 변형, 부식 여부 등

□ 점검결과 조치

○ 시정·보완, 개선검토, 권장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조치 요청

- ※ 단, 안전사고 발생 우려사항은 현장 즉시 조치

□ 행정 사항

○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무면제(인사처, 교통시설운영처)

- 관련근거 :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4항 ‘노동조합의 전임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-1200(2010.11.3) ‘질의회시’ 2006년 2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(2006.8.30)
- 주요내용 :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자체점검 참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은 근로시간면제에 해당

○ 점검결과 보고('16. 4. 11(월)까지)

- 수범사례 발굴(반기 종합 이사장 표창 상신)

○ 안전점검 출장비(여비규정에 따른 시내출장비)지급

- 붙 임 : 1. 산업재해예방 사업장 순회점검 세부 일정 1부.
2. 점검 보고서(복명서) 1부.
3. 산업안전·보건분야 세부 점검사항 1부. 끝.